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요약

2016.4월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및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제도를 요약 안내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령을 참고하시거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2016.3)\*」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전자(세금)계산서 > 참고자료실

# I 전자세금계산서

## 1 전자세금계산서 정의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부가가치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sup>\*</sup>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 전자적 방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④)

- 표준인증을 받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이용(ERP)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이용(ASP)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이용(홈택스)

## 2 의무발급 대상자

-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사업자 대상으로 2014.7월부터 발급의무 시행 중

시행연월	내 용
2010.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 1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2. 1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4. 7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정기신고) 사업장별 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기준연도	전자발급 의무기간	비 고
2015년	2016.7.1. ~2017.6.30.	* 2015년 귀속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  
그 다음 과세기간

\* (예시) ’15년 연간 공급가액이 2.5억원 개인사업자가 ’16.5월 공급가액 1억원 증액 수정신고시 → ’16.7.1. ~’17.6.30. 전자발급 의무 적용

###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 ○ 발급시기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흠택스에 입력된 때에 공급받는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에 도달한 때 발급완료된 것임

#### ○ 발급기한

-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7조(재화,용역 공급시기)에 발급
- (예외) 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sup>\*</sup>까지 발급 가능
  - \*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 |  |
|--|
|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임의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 ○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 흠택스에서 발급시 발급과 동시에 전송되므로 별도 전송절차 없음

## 4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 ○ 발급·전송 시 혜택

- (신고간편)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납세협력비용 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비용 절감

### ○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부과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 하지 않은 경우</li></ul>	2%	매입세액불공제 (단, 16년 거래분부터 확정 신고 기한 내 수취시 공제가능하되 1% 가산세 부과)
	지연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해당 과세 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li></ul>	1%	1%
	종이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 계산서 발급</li></ul>	1%	
전송	지연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li></ul>	개인 0.1% 법인 0.5%	-
	미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li></ul>	개인 0.3% 법인 1.0%	

#### \* 과세기간 내 발급:

- 1월~5월 거래분은 6.30일까지, 6월 거래분은 특례규정에 의해 7.10일까지 발급
- 7월~11월 거래분은 12.31일까지, 12월 거래분은 특례규정에 의해 다음해 1.10일까지 발급

\* 지연발급 · 미전송 · 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로 부과하되, 고의적 의무위반은 한도 없이 부과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중복 부과하지 않음

## II 전자계산서

### 1 전자계산서 정의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부가가치 세법을 준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거래>

구분	주요 면제대상 거래
부가가치 세법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li><li>·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li><li>· 의료보건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 혈액</li><li>· 여객운송 용역(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 제외)</li><li>·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등(광고는 제외)</li><li>· 금융·보험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li><li>·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등</li></ul>
조세특례제 한법 제10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함)</li><li>·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리모델링 용역 포함)</li><li>·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li></ul>

### 2 의무발급 대상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5.7.1. (최초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면세거래가 있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li></ul></li></ul>
2016.1.1. (추가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총수입금액: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수입 금액의 합계액</li></ul></li></ul>

\* 수정신고 등으로 인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으로 함

- 법인·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면세사업' 영위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는 아래와 같음

구분	사업 형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	
		여부	내 용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거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만 영위	×	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 면세거래가 없음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 면세 사업 겸업	○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만 영위	○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

-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금액 및 면세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과 관련한 수입 금액은 총수입금액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구분	총수입 금액	과세분 공급가액	면세분 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11억원	2억원	9억원	발급의무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사례2	10억원	-	10억원	발급의무 ○(면세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사례3	9억원	4억원	5억원	발급의무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사례4	9억원	1억원	8억원	발급의무 ×(과세 공급가액 3억원 미만 &총수입금액 10억원 미만)

-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기준) 개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여부는 각각의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함

\* (예시)사업장별 발급의무(사업장 수입금액은 모두 면세수입금액으로 가정)

구분	계	A사업장	B사업장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13억원	11억원	2억원	A사업장은 발급의무가 있으나, B사업장은 발급의무가 없음
사례2	13억원	6억원	7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모두 발급의무가 없음
사례3	8억원	5억원	3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모두 발급의무가 없음

### 3 전자계산서 발급·전송기한

○ 전자계산서 발급 및 발급된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전자 세금계산서와 동일함

○ 전자계산서 발급 기한

-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를 준용

- (특례)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사례 >

◎ (사례 1) '16.6.1. ~ '16.6.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6.6.3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6.7.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6.7.12.까지 전송

◎ (사례 2) '16.6.1. ~ '16.6.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6.6.1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6.7.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6.7.12.까지 전송

◎ (사례 3) '16.6.1. ~ '16.6.25.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6.6.2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6.7.11.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6.7.12.까지 전송

\* 7.10일이 발급기한이나 공휴일로 7.11로 발급기한 순연, 전송기한도 7.12로 순연

○ 전자계산서 전송 기한

-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1. 공급하는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 4.작성연월 5.기타 참고사항

-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계산서는 기한 내에 다시 전송해야 하며, 발급·전송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4 전자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 ○ 발급·전송시 혜택

- ①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 세액 공제
- ② (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시  
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
- ③ (신고 간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발급받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 전송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 (가산세)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부과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미발급	▪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
	허위등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공급받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 ('16년 이후)	
전송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예) 16.6.13. 발급한 경우, 16.6.15.~17.1.11.까지 전송	*연도별· 사업자별 다름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예) 16.6.13. 발급한 경우 17.1.11.까지 미전송		

- (전송 위반 가산세 단계적 부과)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종이발급, 지연(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발급의무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발급의무 위반별 연도별 가산세율 >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2016	2017	2018	2019
종이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1%	1%	1%	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1%	1%	1%
지연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1%	0.5%	0.5%	0.5%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1%	0.1%	0.5%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3%	1%	1%	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3%	0.3%	1%

### '15.7.1.부터 발급의무 대상자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6.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부터는 법령상 발급 시기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 ☞ 발급위반 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됨

### '16.1.1.부터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6.1.1. ~'16.12.31.까지 종이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10.까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 ☞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16.1.1. ~'16.12.31.중 종이계산서 발급시에도 법령상 발급시기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 ☞ 발급시기 위반, 허위·가공으로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요약

① 공인인증서 등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로그인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 용·ASP용 공인인증서 중 하나 필요</li><li>*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흠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li></ul>
② 회원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세청 흠택스(<a href="http://www.hometax.go.kr">www.hometax.go.kr</a>)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li></ul>
③ 발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li></ul></li></ul>
④ 전 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흠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음</li></ul></li></ul>
⑤ 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흠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흠택스에서 조회 가능</li></ul></li></ul>
⑥ 부가가치세 등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li></ul>